

1. 의결주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서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분리되어, 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에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되,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고시에 위임하여 법적 명확성과 신규사례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에 따른 거주요건 특례 신설(안 별표 2 제2호가목 비교)

-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그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법 제4조제2항제2호)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구체적 대상 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 위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그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제2조제3항 관련)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가. 해당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표]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제2조제3항 관련)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가. 해당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 표] (현행과 같음) 비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그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연 락 처	(044) 202 - 1961